

어구보증금 관리를 위한 회계·세무 자문

◇ 어구보증금·대상사업자 관리,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지원 등과 관련한 이슈 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

□ 목적

- 어구보증금제도 시행('24.1.12.)에 따라 예상되는 법률적 이슈(회계·세무 포함)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□ 자문 결과

- ① (어구보증금제 운영)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회계·세무적 이슈
 - (어구보증금) 어업인 등이 부담하고, 사업자가 예수하여 센터에서 보관 및 관리하다가 어업인 등에게 다시 반환되는 것임
 - * (법인세법) 어구보증금은 사업자 및 센터의 수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
 - ** (부가세법) 어구보증금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
 - (취급수수료) 센터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표식 관리 대가
 - * (부가세법)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법에 정한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
 - 취급수수료는 관리 편의 및 상거래 관행상 월합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센터에 발행
 - (대상사업자)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법적 의무사항 이행 주체
 - 어구에 표식 부착 후 판매하고, 보증금을 센터의 고지서에 따라 납부, 취급수수료 신청 및 수령
 - * 어구보증금제 시행으로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음
 - ** 과세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-선구점, 사업자-어업인, 선구점-어업인 간의 거래에서도 공급대와 어구보증금 구분관리 필요
 - *** 취급수수료는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센터에 거래징수